

1. 조합원의 자격

거 등록한 자로서 우리조합에 출자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.

- 기계설비공사업, 가스시설시공업(제1종) ⇒ 20좌
- 기타업종 ⇒ 10좌

다만, 위의 좌수는 저희 조합 정관상 기준좌수이며, 건설업을 신규등록하거나 유지하기 위한 “보증 가능금액확인서” 발급에 필요한 출자좌수는 아래의 표와 같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
○ 신용등급별 예치금액

2. 가입절차

※ 참고사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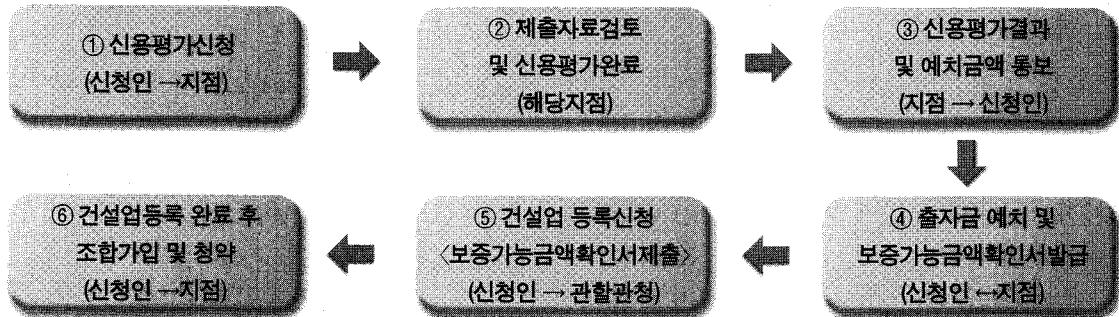
- 기계설비공사업, 가스시설시공업(제1종)은 ①~⑥의 절차에 의하며, 그 외 업종은 ⑥의 절차에 의해 가입업무를 진행하시면 됩니다.
- 조합 소정서식은 조합 홈페이지 「공개자료실」→「업무관련서식」에서 관련업무별로 다운받아 사용하시면 됩니다.
- 제출서류의 작성, 변경 등의 경우를 대비하여 법인인감(개인은 개인인감) 도장을 지참하시면 편리합니다.
- 조합에 제출하시는 서류중 동기부등본(법인, 부동산 등), 인감증명서는 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자료이어야 합니다.

구 분	AAA~CCC등급	CC등급	C등급	비 고
예치좌수	46좌	51좌	76좌	예치금액은 예치좌수 ×
예치금액	41,278,100원	45,764,850원	68,198,600원	좌당지분가(897,350원)임

※ 등록업종이 2개 이상일 경우에는 업종별로 각각 예치하여야 합니다.

※ 좌당지분가는 매년 6월말, 12월말을 기준으로 변동이 됩니다.

○ 조합가입업무 흐름도



가. 신용평가 신청

“보증가능금액확인서”를 발급 받고자 하는 대상자는 조합에 방문하여 신용평가를 우선적으로 받으셔야 합니다.

○ 제출서류

기본자료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, 임의자료는

해당사항이 있을 경우에만 제출하시면 됩니다.

1. 기본자료(반드시 제출)

서 류 명	확인처
1. 신용평가신청서 (조합서식)	신청인이 직접 작성 서식작성 요령은 홈페이지 「조합업무안내」참고
2. 신용조사서 (조합서식)	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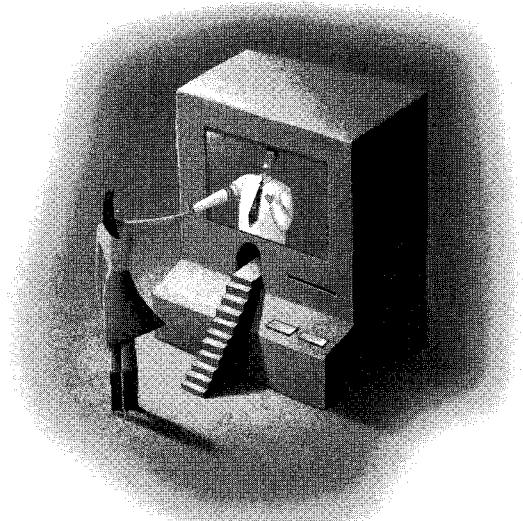
2. 임의자료

서 류 명	확인처
1. 법인등기부등본(개인은 사업자등록증 사본)	관할법원
2. 법인인감증명서(개인은 개인인감증명서)	관할법원
3. 납세증명서 : 증명서상 유효기간 이내	관할세무서
4. 재무제표(대차대조표, 손익계산서) : 가능한 경우 2회계년도 자료 법인인 경우 “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”와 “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 조정계산서”를, 개인인 경우 “조정계산서” 또는 “종합소득세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”를 첨부하여 세무대리인의 확인을 받아야 함. 외부감사대상법인은 반드시 “외부감사보고서” 제출	세무대리인
5. 특허, 건설관련 신기술, 기타 산업재산권, ISO인증 사본 등	근거서류첨부
6. 보유부동산(사옥 및 대표자 개인주택)의 등기부등본	관할법원
7. 대표자의 건설업관련 기술자격증 사본	근거서류첨부

임의자료 중 해당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제출서류를 누락하는 경우에는 신용평가시 불이익을 받게됩니다.

나. 출자금 예치 및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

조합의 신용평가 결과에 따라 업종별 법정자본금(2억원)의 100분의 20내지 100분의 50범위 내에서 현금을 예치하게되면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발급 받으실 수 있으며, 신용등급별 최소 예치금액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.



○ 제출서류

1. 보증가능금액확인신청서(조합서식)
2. 예치서(조합서식)
3. 법인등기부등본(개인사업자는 생략) 1부
4.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
5. 법인인감증명서(개인은 개인인감증명서) 1부

결한 다음 조합이 제공하는 각종 업무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.

다. 조합가입 및 청약

조합으로부터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고, 건설업 등록을 하신 분은 조합가입 및 청약절차에 따라 예치금을 조합출자금으로 전환하신 후 조합이 정한 제 규정에 의하여 조합과 업무거래 약정을 체

○ 제출서류

1. 청약서(조합서식)
2. 가입원(조합서식)
3. 출자증권담보제공증서(조합서식)
4. 사업자등록증 사본
5. 법인등기부등본(개인사업자는 생략)
6. 법인인감증명서(개인은 개인인감증명서)
7. 전문건설업등록증 사본(원본제시)

○ 신용등급별 예치금액

구 분	AAA~CCC등급	CC등급	C등급	비 고
예치좌수	46좌	51좌	76좌	예치금액은 예치좌수 × 좌당지분가 (897,350원)임
예치금액	41,278,100원	45,764,850원	68,198,600원	

※ 등록업종이 2개 이상일 경우에는 업종별로 각각 예치하여야 합니다.

※ 좌당지분가는 매년 6월말, 12월말을 기준으로 변동이 됩니다.



8. 정관(개인사업자는 생략) 각 1부

※ 출자금 예치 및 신용평가를 위해 제출하신 서류와 중복된 서류는 생략하셔도 됩니다.

실 수 있습니다. 신용거래의 경우에도 융자금을 상환하거나 담보물을 제공하는 때에는 최대 26배까지 이용하실 수 있도록 보증배수 가산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

3. 조합원의 권리와 책무

가. 권리

조합원은 의결권을 가지며, 총회의 대의원, 운영위원회의 위원 및 감사로 선임될 수 있고, 보증·융자 기타 조합의 사업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.

나. 책임

조합원은 그 지분액을 한도로 하여 조합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.

다. 의무

조합원은 정관, 규정 및 기타 각종 약관을 준수하여야 하며, 조합에 대하여 통지 및 신고의무가 있습니다.

4. 조합이용시 혜택

가. 조합원이 납부하는 보증수수료 및 융자금이자는 보증·융자한도 및 지분액 증가 등으로 조합원에게 환원하여 드리고 있습니다.

나. 조합원은 조합에 출자한 금액(거래지분가)의 최대 26배의 범위 내에서 각종 보증을 이용하

다. 조합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매건별 보증 및 융자채무약정을 체결하지 않고 일정기간(2년)에 한번만 약정을 체결하면 되는 한도거래용 채무약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 신규조합원은 조합예치(출자)후 1년이 경과하면 거래한도 범위 내에서 즉시 융자하여 듭니다.

① 입보거래 : 742,000원(좌당)

② 신용거래 : 667,000원(좌당)

라. 조합원사가 사무실에서 인터넷으로 직접 보증서를 신청하여 조합을 찾아오지 않고서도 보증서를 발급 받을 수 있는 인터넷보증제도를 보증기관 최초로 운영하고 있습니다.

마. 융자금에 대한 이자는 조합을 방문하지 않고 매월 자동이체 하실 수 있습니다.

바. 보증서 발급일 현재 당해 조합원의 전체 보증잔액(당해 발급분 포함)이 자기출자 지분액 1배 이내인 경우에는 건당 최저수수료(3,000원)만 징구하므로 저렴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.

사. 기계설비기술자에 대한 기술능력 향상을 위하여 전문교육 기관에 무료로 위탁교육을 연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.